



과업지시서

「K-GTB 예인선 지원 용역」



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

목 차

1. 과업 설명서	1
2. 일반 과업지시서	2
3. 세부 과업지시서	7
4. 예정 공정표	8
5. 기타 상세 특수조건	8



1. 과업 설명서

가. 과업 개요

- ☐ 과업 명칭: K-GTB 예인선 지원 용역
- ☐ 과업 기간: 계약일 ~ 2026.10.30.
- ☐ 예산: 63,231,300원(부가세 포함)
- ☐ 대금지급방법: 활용 횟수 및 시간에 따라 기성지급

나. 과업의 목적

- ☐ 본 과업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(이하 ‘연구소’라 함)에서 수행 중인 “함정용 저소음 복합재 추진기 핵심기술 개발” 과제와 관련하여 연구소 보유 시험선(Korea Green-ship Test Bed, 이하 K-GTB) 운항 시 부두 이·접안 및 비상예인을 위한 예인선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.

다. 과업의 범위

- ☐ K-GTB 입출항 관련 행정 지원
- ☐ K-GTB 부두 이·접안 및 비상예인을 위한 예인선 지원

라. 과업 시행방법

- ☐ 선박 예인 지원이 가능한 예인 전문 업체에 용역으로 실시한다.

2. 일반 과업 지시서

가. 과업 수행 기준

- 1) 본 과업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(이하 ‘연구소’라 함)에서 수행 중인 “함정용 저소음 복합재 추진기 핵심기술 개발” 과제를 위한 과업으로서, 본 과업지시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위 과제 계약의 계약서를 준용하여 본 계약에도 적용한다.
- 2) 본 용역은 연구소의 계약업무요령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합리한 사항이나 이상이 발견될 경우,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·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및 실시요령에 대하여 연구소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따른다.
- 3)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설비와 전문 기술지식, 인력을 활용하여 용역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용역이 연구소에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4) 계약상대자는 관계 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최대한 최신 설비 및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야 한다.

나. 과업 수행방법 및 요원관리

- 1)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은 이 과업지시서와 연구소의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시행하며, 임의로 과업을 변경, 시행할 수 없다.
- 2) 계약상대자는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- 3)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용역자의 과오로 지연될 경우에는 본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, 장비 등을 추가 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4)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수집 및 행정사항 등은 직접 수행하되, 특별히 필요한 경우 연구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5) 연구소는 계약상대자의 용역 참여요원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태만, 계약위반 또는 객관적인 자격 미달 등으로 과업 수행에 현저한 지

장을 초래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- 6) 본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·물적사고에 대한 민·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.
- 7) 계약상대자는 본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과업의 각 단계 및 분야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연구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또한 위험 요소에 대한 제거/완화 계획 및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.

다. 과업의 변경

- 1) 용역 수행 중 예기치 않은 사유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와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연구소의 요청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.
- 2) 용역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처리하며,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등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.
- 3)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,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처리한다.

라. 하도급의 시행

-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,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적·물적 사고 및 그 밖의 손해에 대한 민·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.

마. 특허권

- 1)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 사전협의 및 검토를 거쳐야 하며, 그 사용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.
- 2)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생성한 자료 및 성과

물을 연구소의 사전 승인 없이 특허·실용신안 등의 지식재산권 출원, 논문·보고서 등의 발표 또는 기타 대외 공개에 활용할 수 없으며, 계약 종료 후에도 이 조항에 따른 의무는 존속한다.

바.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

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.

- 1)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
- 2)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준비 과정이나, 작업 공정이 현저하게 미달되어 계획된 작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
- 3)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
- 4) 계획된 용역 실시계획과 실제 작업 지원에 활용되는 장비와 인력이 연구소의 승인 없이 상이할 경우
- 5) 계약상대자가 연구소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아 본 사업의 목적 달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
- 6)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
- 7)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

사. 착수 및 보고

- 1)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,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① 용역 실시 계획서
 - ② 용역수행자 명단
- 2) 계약 시점에서 용역은 착수된 것으로 간주하며, 계약상대자는 연구소가 요청할 경우 공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아. 과업수행 성과보고

- 1) 계약상대자는 과업 종료 7일 이전에 과업 수행에 대한 성과보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소가 요청하는 경우 매분기에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협의 조정할 수 있다.
- 2) 계약상대자는 성과보고 자료에 기 수행된 항목들에 대한 진도율과 수행 내역, 관련 사진, 현 단계의 문제점과 대책, 향후 일정 및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3) 본 성과 보고는 연구소가 과업의 진행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.

자. 성과물(기술자료 포함) 제출

- 1) 과업성과물은 연구소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,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서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 또한 성과물이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연구소에서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정·보완하여야 한다.
- 2)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과업성과물을 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활용 증빙용 사진

차. 용역 성과물의 소유

- 1) 용역 수행으로 생산된 성과물의 지식재산권 및 특허권에 대해서는 (계약예규)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한다.
- 2) 연구소는 정책상 필요한 경우 사업결과물의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.
- 3)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·생산한 자료, 서류, 시제품 및 성과물을 연구소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의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, 용역 완료 시 연구소에 제출 및 연구소와 협의한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- 4) 성과물의 연구목적 활용, 제3자 제공, 배포 및 공개 등 활용에 관한 사항은 연구소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, 학술연구를 위한 학술대회 발표 또는 논문 게재 또한 연구소와 사전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.

카. 유지보수 등

- 1) 계약상대자는 전기추진 차도선 예인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에 대해 필요 시 손상정도에 따라 연구소와 협의를 통해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.

타. 비밀의 준수

-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기간 전·후를 막론하고 본 과업과 관련하여 획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연구소 및 연구부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. 본 항목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진다.

파. 기타사항

- 1) 이 과업지시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상세 사항은 연구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2) 연구소에서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감독관을 지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감독관은 연구소의 역할을 수행한다.

3. 세부 과업 지시서

가. 개요

- ☐ 본 과업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(이하 ‘연구소’라 함)에서 수행 중인 “함정용 저소음 복합재 추진기 핵심기술 개발” 과제와 관련하여 연구소 보유 시험선 K-GTB 운항 시 부두 이접안 및 비상예인을 위한 예인선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.

나. 범위

- ☐ K-GTB 입출항 관련 행정 지원
 - 입·출항신고 및 행정지원

- ☐ K-GTB 부두 이접안 시 예인선 지원
 - 이·접안 시 줄잡이 지원
 - K-GTB 접안 부두(국립목포해양대학교*) 및 인근 부두 입·출항 시 예인선을 활용한 선박 예인 지원
 - * 접안 부두 변동 가능

- ☐ K-GTB 운항 시 사고대응 및 비상예인을 위한 예인선 지원
 - 운항 중 동력 상실 또는 전력계통이상에 따른 예인 필요 시 예인선을 활용하여 지정된 부두로 이동 조치
 - 운항 시 긴급 회피 또는 선회가 필요한 경우(장애물 또는 선박과 충돌이 우려되는 경우) 예인선을 활용한 운항 지원

다. 제출물

- ☐ 운항지원 활용 증빙 자료(사진, 예인선 항해 일지(필요 시) 등)

4. 예정 공정표 (안)

추진 내용	추진 일정	비 고
입출항, 이접안 및 예인 지원	~2026. 10. 30.	계약일로부터~
과업 완료 보고서 제출	~2026. 10. 30.	

※ 상기 추진일정은 계약 시기 및 연구소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5. 기타 상세 특수조건

- 1) 계약상대자는 본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용역 추진 중 제시되는 연구소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
- 2) 계약상대자와 연구소는 본과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적극적이어야 한다.



6.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

- 본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 연구소 보안업무요령 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는 착수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. 과업 참여자가 교체된 경우 즉시 신규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연구소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,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·형사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.
-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 외 참여를 제한하며 필요시 연구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과업 수행 사무실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여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.

-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.분실.손괴 등을 방지하고, 제반 보안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해 정.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
-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, 대외비,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.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, 비밀, 대외비 등 중요사업에 관계된 자료를 생산할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. 단, 비밀이 아닌 과업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.
-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 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비밀의 경우, 인쇄·열람관련 규정을 준수 할 것
 - 성과물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 금지
 - 회의자료 등은 반드시 필요한 물량만 발행하되 필히 회수·파기 조치 할 것
 - 불량·파지 등은 반드시 소각·파기 조치 할 것
-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아래의 정보 누출 시 「국가계약법」시행령 제 76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[별표2]에 따라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,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으로 제재한다.
 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분서
 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
 - 연구소 지정 「보안업무요령」 제66조의 비밀 및 대외비
- 용역업체가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관리 및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한다.
- 연구소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과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.
- 과업성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위 사항 이외에 「보안업무요령 외부용역 발주 시 보안대책」을 준수하여야 한다.